

● 제322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2024. 2. 2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유만희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552

I. 개정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유만희 의원외 18명

나. 제 안 일 : 2024. 02. 02.

다. 회 부 일 : 2024. 02. 0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,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.
- 초저출생 시대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‘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’

조건을 삭제함.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중 서울시에서 일정기간(6개월)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 변경 (안 제4조의4)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‘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’ 조건을 삭제하여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것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	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
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신청일을 기준으로 <u>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</u> 관할	1.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</u> 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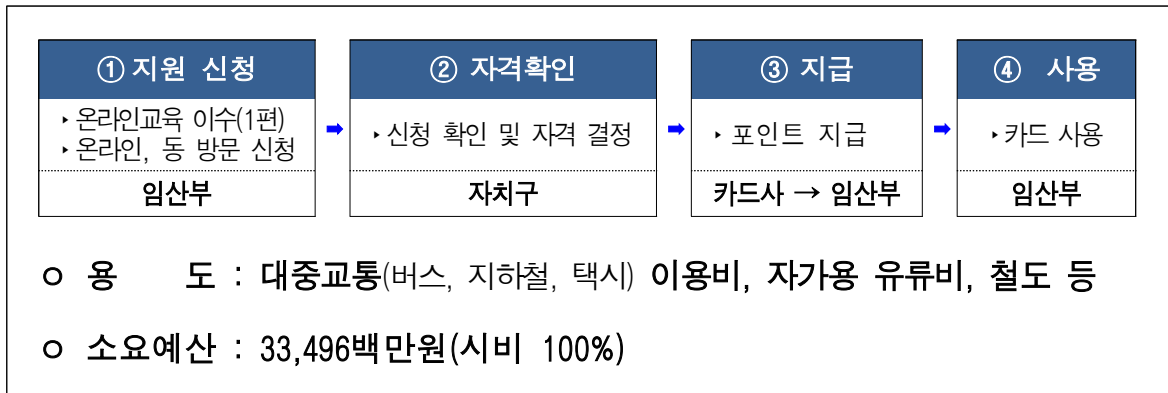
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<u>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</u>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 2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주</u> <u>하는</u>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인 임산부¹⁾의 이동편의 증진 및 임신·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.

임산부교통비 사업 개요
○ 사업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한 임신 3개월 ~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○ 사업내용 :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(사용기한 : 출산 후 6개월) ○ 추진체계 : 협약된 신용(체크)카드에 지급 ※협약사:국민,BC,삼성,신한,우리,하나

1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

- 현행 조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하여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불가한 사례
▶ 서울에 살다가 결혼 후 경기도에 거주한 이OO씨, 임신 후 친정엄마 근처인 서울시 A구로 전입하였으나 신청 당시 6개월 계속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 불가 ▶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는 임신 중으로 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불가

-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계획인 “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」 48개 사업 중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으로 이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음²⁾.

2)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(2024. 2. 14.), 보도자료 : '서울형 산후조리경비' 6

※ 임산부교통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근거 조례 상에 거주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, 집행기관 방침상의 제한임.

〈「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」 사업 중 거주요건(6개월) 부여 사업〉

실국	사업명	신청자격	
		거주요건	기타 요건
여성가족 정책실 (2개)	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市 출생신고 출산 후 60일 이내
	임산부 교통비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이내
시민 건강국 (3개)	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출산 후 8주 이내
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	市 6개월 이상 거주	-
	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20~49세 여성

※ 거주요건 확인 기준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연속 6개월 이상 거주

- 또한 "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" 사업 중 5개 사업(서울엄마아빠택시,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·밀키트 할인 지원, 서울형 가사서비스, 서울우먼업 구직지원 사업)은 서울시 거주만으로 지원되고 있음.
- 이에 초저출산 상황에서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원기준에서 '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하여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
개월이상 거주요건 전격 폐지, 출산맘 몸·마음 챙겨.

- 다만 바우처의 특성 상 7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어 거주요건 폐지시 거주지 이동을 통해 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.

<지자체별 유사사업 추진 현황>

구분		지원기준	금액
서울시	광역	·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임신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	70만원
인천시	광역	·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	50만원
경기도	기초	안성 · 신청일 기준 안성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	50만원
		가평 · 출산일 기준 안성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	30만원
		여주 · 임신확인일 기준 여주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	30만원

- 이 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(2023.11.)³⁾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,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에서 재정 여력이 높은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 이동 유발,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의 경쟁적 증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측면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사업 운영 시 최소 거주요건

3) 국회예산정책처(2023.11.), “중·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: 3. 저출산 대응 전략”, 예산안분석시리즈Ⅶ.

검토 및 광역-기초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함임.
- 초저출산 상황에서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출산·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거주조건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라 타지자체에서 중복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